

선거관리규정



주소기반산업협회

Korea Address Business Association

사단법인 주소기반산업협회 선거관리규정

[제정 2021년 11월 08일]
[개정 2023년 07월 13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임)에 따라 협회의 임원을 공정하게 선출함으로써, 본 협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정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정회원을 말한다.

제3조 (선거관리) 선거사무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통합 관리한다.

제4조 (적용범위) 본 협회의 선거관리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5조 (선거권) ① 총회는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이 있다.

제6조 (선거방법)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실시하되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기표방법에 의한 선거인의 직접, 비밀, 무기명, 전자 투표를 실시한다.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 (설치 및 위원 정수) 본 협회 정관 제16조 ①에 의거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며, 위원 정수는 5인 이하로 한다.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의 효율적인 사무업무를 위해 협회에 설치한다.

제9조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중 임원직을 퇴임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자동 해임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직무) ①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심사와 사퇴수리 및 기호추첨
2. 선거인 자격심사 및 명부작성
3. 투·개표소의 설치 및 투·개표의 관리
4. 참관인의 신청 등록
5.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의 작성보고
6. 선거운영의 통제 및 승인
7. 선거소청에 관한 사항
8. 위반사항 및 벌칙에 관한 사항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회의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위원장 선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임) 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임, 해촉 또는 파면되지 않는다.

1. 각종 선거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2.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4. 기타 선거관리위원으로써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14조 (회의소집) ① 회의는 협회 회장의 개최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구한 2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16조 (사전사퇴) 위원 중에서 회장,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총회 소집 공고) 후 3일 이내에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제4장 선거인 명부

제17조 (명부작성)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회장은 선거 공고일 현재의 선거인 명부(별표 1호 서식)를 선거일 15일 전까지 작성하여 위원회에 송부하며, 선거인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명부열람) 선거인은 필요시 선거인 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제19조 (이의신청과 결정) ①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후보자

제20조 (등록고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고시를 선거일(총회개최일) 5일 전에 본 협회 사무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후보자 등록)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 공고 일로부터 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별표2호 서식)와 소정의 서류(별표 3호 서식)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후보자등록관리대장(별표 4호 서식)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마감 후 위원회는 그 즉시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후보자의 사퇴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입후보자 미등록 시 후보추천)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 등록이 없거나,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유효하게 등록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회장 후보를 추천·확정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보를 선거인에게 공고하고, 총회에서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26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7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8조 (선거운동원) ① 후보자는 10인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원은 본 협회 회원에 한하며 선거운동원의 명단(별표 5호 서식)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선거운동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며, 등록된 선거운동원은 2분의 1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

제29조 (선거운동의 금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한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거유인물은 위원회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2. 선거운동기간 중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단합대회, 향우회, 야유회, 종친회 및 동창회 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4.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5.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6. 후보자의 신분, 경력, 인격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타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7. 타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 선거인 및 위원에 대해 폭력, 공갈, 협박, 납치를 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8.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의 수수 및 향응(음식물포함)의 제공행위는 할 수 없다.
9.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기부를 받는 행위나 기부권유 또는 요구행위를 할 수 없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제반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규정 할 수 있다.

- 제30조 (선거비용) ① 이 규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선거사무비용, 위원회 운영비용 등을 말하며 후보자가 입후보 등록 시에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은 위원회에서 실비 범위 내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위원회에 납부한 선거비용은 선거 종료 후 정산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 개인별 선거운동비용 범위는 입후보자와 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협의 결정한다.

제7장 선거일과 투표

제31조 (선거일) 선거일은 총회 일에 실시한다.

제32조 (투표소의 설치) ① 투표소의 기표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 종사원을 두며, 사무국 직원 중에서 선발한다.

제33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별표 6호 서식)에는 후보자의 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병기한다.

② 기호추첨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위임하는 자가 위원회의 입회 아래 추첨한다.

제34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5조 (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②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36조 (기표절차)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위원회의 입회아래 선거인 명부와 대조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기표소에서 ㉸표를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37조 (투·개표참관인) ① 위원회는 투·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투·개표참관인은 각 후보자별로 2인 이내로 하되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8장 개표 및 당선인

제1절 개 표

제38조 (개표관리) 개표사무관리는 투·개표참관인의 입회 아래 위원회가 행한다. 다만, 개표사무는 사무국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 (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도장을 날인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 당해 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 난에만 2개 이상 기표된 것
3.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2절 당 선 인

제40조 (당선인의 결정) ① 재직선거인 과반수 출석에 출석선거인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다만, 후보자가 선출 대상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당선선포와 동시에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위원회가 당해 선거에 대하여 무효 판결을 하였을 때

2. 당선인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와 위원회로부터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받은 경우

제42조 (재선거)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선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위 득표자를 후보자로 정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재선거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③ 1차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들만 재선거에 임하고, 1차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1인, 차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위 득표자 중 연장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9장 선 거 소 청

제43조 (선거소청) ①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 결정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청할 수 있다.

제44조 (소청에 대한 결정)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은 심의의결서(별표 7호 서식)로 하되, 의결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 소청인 및 피소청인(당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위반사항 심의)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원, 선거인 및 회원이 본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였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진상을 파악 하여 5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은 심의의결서에 의하되, 의결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 해당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46조 (벌칙) 위원회에서 제44조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 심의 결과 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경우의 벌칙 대상자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후보자가 위반한 경우 : 후보자
2. 선거운동원이 위반한 경우 : 선거운동원 및 해당후보자
3. 선거인, 회원이 위반한 경우 : 본인

제47조 (출장제한) 선거운동 기간 중 본 협회 임·직원은 정상적인 업무 이외의 출장을 할 수 없다.

제48조 (준용) 이 규정 이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준한다.

부 칙 (2013. 7.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 거 인 명 부

일련 번호	상 호	성 명	사 업 장 소 재 지	주 민 등 록 번 호	날 인	비 고

<별표 2>

입후보 등록 신청서

현 주 소			
사업장소재지			
성 명		상 호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회 년 월 일	

본인은 사단법인 주소기반산업협회에 입후보 하고자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인

사단법인 주소기반산업협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표 3>

입후보등록 구비서류

- | | |
|---------------------|----|
| 1. 입후보등록신청서(별표2호서식) | 1통 |
| 2. 서약서(별표3-1호 서식) | 1통 |
| 3. 이 력 서 | 1통 |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1통 |
| 5. 주민등록등본 | 1통 |
| 6. 인감증명서 | 1통 |

<별표 3-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사단법인 주소기반산업협회에 입후보함에 있어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와 결정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것이며 본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사단법인 주소기반산업협회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표 4호 서식>

후보자등록 관리대장

일련 번호	성 명	상 호	사 업 장 소 재 지	업 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 번호	날인	비 고

※ 등록구분: 비고란에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기재
단, 대리인이 등록시는 후보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날인: 후보자의 인감으로 날인한다.

<별표 5호 서식>

선거운동원명단

후보자명	선거운동원							비고
	일련 번호	성명	상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 록번호	날인	

※ 선거운동원의 날인: 운동원 본인의 날인

<별표 6호 서식>

투 표 용 지

	기 호 1	기 호 2	기 호 3
후 보 자	김 (金 × × × ×)	허 (許 × × × ×)	박 (朴 × × × ×)
기 표 란			

사단법인 주소기반산업협회○선거관리위원장

<별표 7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선관위 제 호 20 . .

1. 심의일시 :

2. 심의장소 :

3. 심의내용 :

4. 의결주문 :

5. 이 유 :

6. 심의위원 : 사단법인 주소기반산업협회○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 (인)

위 원 ○○○ (인)